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청 소 년 기 본 법 시 행 규 칙 일 부 개 정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여성가족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개정이유

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공고 방법 중 2005년 도입된 일간지 공고의무는 삭제하여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2·3급 자격증이 통합됨에 따라 합격자 결정 방법을 정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청소년지도사 자격시험공고 방법에 ‘일반일간신문’ 삭제
- 나. 청소년지도사 2·3급 통합 및 2급 시험제도 폐지에 따라 자격검정 합격결정 방법 개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관계부처 의견 수렴 예정

라. 기타 : 1) 별첨

2) 입법예고 예정

3) 행정규제 심사 예정

여성가족부령 제 호

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「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과 청소년지도사”를 “청소년지도사”로 한다.

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.

②2급 청소년지도사 합격자는 영 제20조제3항 별표2의 2급 검정 과목 이수자 중 자격기준 서류심사 합격자로 한다.

별지 제3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■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[별지 제3호서식]

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원서

(급)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응시하고자 다음 사항을 서약하고 이 원서를 제출합니다.

이 원서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으며, 만일 시험합격 후에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때에는 합격취소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.

년 월 일

응시자

(서명 또는 인)

자격검정기관의 장 귀하

* 색상이 어두운 란은 응시자가 적지 않습니다.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	①응시 등급 [] 1급 [] 2급	
*응시번호	②성별 [] 남 [] 여	사 진

③성명	한글	④생년월일 (만 세)		3.5cm×4.5cm (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뒷 그림 없이 최근 6개 월 이내 촬영한 것)	
	한자	⑤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)			
⑥주소	자택[]	연락처	자택전화		
	직장[]		직장전화		
			휴대전화		
			e-mail		
⑦현재 직장	명칭	직위	⑧최종학력		
⑨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	2급 취득일자		3급 취득일자		
⑩2급 자격 기준 응시 학력	년 월 일	학교	과 [] 졸업, [] 학위취득		
⑪청소년육성 업무 경력	종사 기간 (연월일)	종사 시설명·단체명·기관명	종사 분야	종사 개월·일	*환산점수
소계					
⑫전문연수 경력	연수 기간 (연월일)	연수 실시기관	연수 과목	연수 시간	*환산점수
소계					
⑬응시수수료 반환 계좌번호	은행명		계좌번호		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

(제2쪽)

⑭검정 과목 이수 (예정) 확인	검정 과목명 (인정 과목명)	이수 과목명	이수 구분명	이수학점
	청소년육성제도론 (청소년육성법규와 행정 또는 청소년정책론)			
	청소년지도방법론			
	청소년심리 및 상담 (청소년심리 또는 청소년상담)			
	청소년문화			
	청소년활동 (청소년수련활동)			
	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			
	청소년문제와 보호 (청소년문제)			
	청소년복지			
	청소년기관 현장실습			
담당 직원 확인사항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				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				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확인 사항 []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, []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[]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응시자가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				
본인 (서명 또는 인)				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				
응시자 참고사항				

- 원서기재요령
 - 응시 등급 : 1급 · 2급 중 응시하고자 하는 급수에 √표를 합니다.
 - 성별 :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 - 성명 : 한글과 한자로 적습니다.
 - 생년월일 :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적습니다.
 - 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) : 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를 적고,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.
 - 주소 : 자택 및 직장에 해당되는 우편번호, 도로명, 건물번호, 동/층/호(법정동, 공동주택명), 전화번호를 적습니다(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주소란에 √표를 합니다).
 - 현재 직장 :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장명, 직위를 적습니다.
 - 최종학력 : 최종학력을 적습니다.
 -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 :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 일자(교부 일자)를 적습니다.
 - 2급 자격기준 응시 학력 : 2급 자격증 응시자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학력사항을 적습니다.
 - 청소년육성 업무 경력 및 종사 기간 : 경력증명서와 동일하게 적되, 날짜까지 정확히 적습니다(예 : 2003. 1. 1. ~ 2004. 1. 15.).
 - 종사 시설명·단체명·기관명 : 청소년육성 업무 종사 시설·단체·기관 등의 이름을 적습니다.
 - 종사 분야 : 청소년육성 업무 종사 분야를 적습니다.
 - 종사 개월·일 : 종사 기간을 개월과 나머지 날짜까지 정확히 적습니다.
(예 : 종사 기간이 2003. 1. 1. ~ 2004. 1. 15.인 경우 12개월 15일로 적습니다)
 - 「청소년기본법 시행령」 별표 1에 따른 1급 청소년지도사 응시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표의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기준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2급 및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취득일 이후의 경력사항만 적습니다.
 - 전문연수 경력 : 여성가족부 지원 청소년지도사 전문연수과정(2003년 7월 이후)을 수료한 것만 차례대로 적습니다.
 - 응시수수료 반환 계좌번호 : 응시자격 부적격자의 응시수수료 반환을 위한 것으로 반드시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적습니다.
 - 검정 과목 이수 확인
 - 이수과목명 : 검정 과목명을 참고하여 본인이 이수한 과목명을 적습니다.
 - 이수 구분명 : 성적증명서를 참고하여 이수한 과목의 이수 구분명을 적습니다(예 : 전공필수, 전공선택, 복수전공 등).
 - 이수학점 : 본인이 이수한 과목의 이수학점을 적습니다.
- 각종 구비 서류 : 별도 첨부
- 사진 :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벗은 상반신 사진(3.5cm×4.5cm)을 부착합니다.
- 접수된 자격검정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.
-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

신·구조문대비표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5조제2항 및 별지 제3호 서식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청소년활동진흥과	
연 락 처	02-2100-6252

현행	개정안
제4조(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실시 등) ① (생략) ②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검정을 실시할 때에는 검정 실시 90일전에 일시·장소·검정과목·검정방법 그 밖에 자격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「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과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.	제4조(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실시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청소년지도사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제5조(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합격결정 등) ① (생략) ②2급·3급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은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. 1. 필기시험에서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,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	제5조(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합격결정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2급 청소년지도사 합격자는 영 제20조제3항 별표2의 2급 검정과목 이수자 중 자격기준 서류심사 합격자로 한다.

